



2019 회원사CEO

업무보고

제 367호(2019. 09. 30 발행)

CAK 



CONTENTS

업무보고 [제 367호]

주요업무 및 업계애로 해소 추진 현황	02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14
건설법령 개정 동향	16
기타사항	22
2019년 07·08·0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23
건설업체 현황	24
회원사 무료 상담 서비스	27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가. 서울시·우리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 서울지역 종합건설업체 애로사항 건의 및 서울시 연구용역(서울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간담회 개최

– 일 시 : '19. 9. 30 (월) 14:00~16:30

– 장 소 : 건설회관 8층 회의실

– 참 석 : 14명

- 서울시(7) : 안전총괄실장,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과장, 재생정책과장, 토목심사팀장, 건설정책팀장, 하도급혁신팀장
- 업 계(7) : 고문철 정책부회장, 이문구 대표(다짐), 권정훈 대표(평광건설), 장범식 대표(하송종합건설), 하동규 대표(하우텍씨엔알건설), 사무처장, 건설정책실장

■ 주요 내용

- 서울지역 종합건설업계 현안사항 건의
- 서울시 연구용역(2건) 추진에 대한 종합건설업계 의견 수렴
 -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및 「서울시 하도급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용역수행 중

구분	주요 내용
1부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업계 현안사항 건의
2부	용역 진행상황 보고(1)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 진행상황 보고(2) [서울시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종합 토론

구분	건의제목	세부내용
1	도시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기술 접목한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노후인프라의 성능개선 등 인프라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마련 기 지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배정 및 신규사업 선정 추진
2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 공기, 적정공사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와 맞게 공사물량 축소 및 재설계 -일식단가 사용 절대 금지(불가피할 경우 일식단가의 세부내용 공개) -서울형품질 재검증 지속 추진 및 할증요소 설계반영 의무화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 노무비 적정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계산시 설계금액 과소적용 및 계약심사시 과다삭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한 설계금액 방지 위해 '계약심사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국토교통성은 예정가격 작성시 설계금액의 자의적 감액행위 금지 명문화 -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제도 또는 자체 구제기준 마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원가 분석자문회의에 건설업계 전문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저감대책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해 서울시 세부지침 등을 통해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적용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공사비 반영 -미세먼지저감대책 관련 공기연장 및 간접비 증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적정 간접비 산출기준 마련 및 간접비 관련 예산확보 배정



구분	건의제목	세부내용
3	복합공종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적정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 -이종의 전문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발주 불가 •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성화 및 실적제한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특수한 기술·공법 적용 공종의 경우 보유업체가 실제 시공하는 점을 감안, 동일실적 제한기준(규모1/3, 금액 1배 이내, 최근 10년 이내 실적 등) 완화 적용하여 경쟁성 확보 • 무분별한 특허공법 과도한 적용 발주 지양 및 발주처의 예규 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
4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개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종합·전문업체간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 확대 등을 지양하고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 요망 </div> <p><단기적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복합공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시 주계약자가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공정 및 부대복합공종을 주계약자가 이행하고, 주계약자의 시공비율이 부계약자보다 높도록 공종 분리 필요 •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한 공종분리검증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비지원사업이 아닌 기초지자체 등 자체사업의 경우 자율 발주 결정권 보장 • 적정임금제(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도입에 따른 공사비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부분의 낙찰률 적용 배제 또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p><장기적 개선방안></p> <p>① 종합·전문업체간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건설업혁신대책을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 요망</p>
5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설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계가 사전에 사업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등 로드맵 마련 제시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건설사 보호·육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방안 마련·시행



나.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한건설협회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MOU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공사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건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협회간 협력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상생 · 발전 도모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19. 9. 10 (화), 14: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5층 임원회의실

– 참 석

· SH공사 : 사장, 건설사업본부장,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건설사업처장 등

· 협 회 : 협회장, 서울시회장, 고문철 대표(양우건설), 김충재 대표(금강주택), 이계연 대표(삼환기업), 상근부회장, 상임임원 등



■ 주요 건의사항

- 시설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적정 지급
-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공기산정 매뉴얼 마련·운영
- 공공공사 불공정관행 개선
- ‘지급자재 설치도’ 발주 관행 개선
- 준공 후 하자보수요원 의무 배치 개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기술자 수급 원활화 지원

■ MOU 주요 내용

-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규제개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공동 대응·노력
- 발주자, 원수급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 품질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기술자 수급 원활화 공동 노력 등



다. 업계 현안사항 건의 및 제도개선 건의

- 건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건의일자 : '19. 7. 29
- 참석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재광 사장, 담당임원 등
 - 협 회 : 본회 회장, 서울시회장, 상근부회장, 임원 등
 - 업 계 : 부영주택 · 동부건설 · 양우건설 · 금강주택 · 삼환기업 대표이사 등

■ 주요 건의사항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최소화
- 미확보 국공유지에 대해 담보대용료 재도입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분담금 기금 대출 활용 개선
-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완화
- 보증업무의 편의성 제고



라. 회원사 애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경과

1)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 연구용역('19. 2~'19. 7) 결과 아래의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 안정화방안 제안

기술인력 고용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채용정보 접근성 개선 구직자 경력정보 신뢰성 개선
기술인력 유지	지원사업 적극성 향상 지원 사각지대 해소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시장질서와 물량	발주물량의 양적·질적 개선 공사비 정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능인력 용 확대방안 강구

- 이에 우리사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 반영 추진
 -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 추진토록 본회 협조 요청 (8.21)
 - 유관기관에 정책 반영토록 연구보고서 배부 (8.22)
 -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반영토록 연구보고서 배부 (8.26)
 - 연구결과 언론 홍보
 - ⇒ 매일경제 등 신문(13곳)에 게재 (8.21~8.25) 및 머니투데이방송에 보도 (9.2)
 - 중소건설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안내 (9.16)

2)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수요 발굴 연구 추진

- 연구용역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용역기간 : '19. 2. 15~10. 15 (8개월)
- 연구용역보고서 주요내용
 -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 미래 산업환경변화 방향 분석
 - 서울지역 건설산업 진단 및 정책수요 도출
 - 서울특별시 건설정책 추진방향
-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울지역 건설기업 지원방안 등 장·단기 정책과제를 서울시 건설산업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 추진

마.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안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의 후속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시행(’19.3.26, ’19.6.19)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기준 변경, 건설기술인 중복 배치 축소,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등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소관 공사현장의 제도 이행현황 점검 요청(건설정책과-4326, ’19.9.11)
- 이에 점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가 제시한 주요 점검사항 회원사에 안내(’19.9.19)



■ 주요 점검사항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임금 직불	시스템 등록 여부	원·하도급 계약현황과 직불시스템 현황 대조
	시스템 활용 여부	매월 직불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청구 여부 확인
	타인계좌 이용 현황 조사	시스템 노무비 청구내역 확인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 여부	직불시스템 청구내역에 노무비·자재장비대금 개별청구 확인
	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누락 및 체불 여부	하도급지킴이 청구내역과 현장근무·장비일지 등 확인·대조
직접 시공	직접시공계획서 적정수립·통보 여부	도급계약 체결후 KISCON 통보·확인(별제 제22호의6 서식)
	직접시공대상 도급금액 적정 여부	'19.3.26. 이전 도급금액 50억원, 이후 최초 계약 7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총 노무비 기준 대상 여부	'19.7.1 이후 최초 계약인 경우 총 노무비 기준 직접시공비율 확인
	직접시공 예외 여부	예외 적용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했는지 여부 확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약 적정여부 (일관하도급·동종하도급·재하도급)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확인, 적정성심사 회피를 위한 간접비 누락 확인
	심사대상 확대 적용 여부	도급금액 대비 82% 이하 또는 예정가격 대비 64% 이하 확인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 업체의 경우 하도급 산출내역서 비교 검토 확인
	심사점수 90점 미만시 대응	계약내용 변경 요구, 재심사, 하수급인 변경요구 등의 조치 확인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건설 기술인 배치	공중·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건산법 시행령 별표5 참고
	중복배치 허용 금액범위 일탈 여부 (키스콘에서 중복배치 확인)	'19.3.26 이후 계약된 공사 - 3억원 미만 3개 현장 - 3~5억원 미만 2개 현장
	중복배치 허용 지역범위 일탈 여부	동일한 시·군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 인지 확인
	중복배치 시 발주자 승낙 여부	공문, 문서 등 확인
	건설기술인 상주 여부	근무상황 관리 서류, 불시점검 등
	하도급공사 현장의 배치 적정 여부	상기항목과 동일하게 점검
타워 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여부 ('19.6.19 이후 대여계약)	발주자에게 30일 이내 통보 여부 (KISCON 또는 서면 통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미달시 적정성 심사 이행 여부	도급금액 대비 82% 미만 또는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 확인
	적정성심사 항목, 기준, 절차의 적정성 여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국토부고시) 참조
	심사점수 90점 미만시 대응	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재심사, 대여업자 변경요구 등의 조치 확인
현장별 기계 보증	현장별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원하도급 계약현황과 현장별보증서 발급현황 대조
	보증서 발급비용 반영 여부	계약내역서상 보증서발급비용 항목 명시 및 반영 여부 확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계정 명시 여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계정 명시 여부
	현장별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공사현장 게시 여부	게시여부 확인



바.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 안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억울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사항 통보

* 해당업체 명단 협조 : 국토부, KISCON

–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 ① 건설산업정보센터(<http://www.kiscon.net>) 접속
- ② 주요서비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바로가기’ 클릭
- ③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업체로 로그인
- ④ 건설공사 대장관리 화면 – ‘신규작성’ 또는 ‘조회&변경통보’

위반혐의사항	건설업체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계약사항 입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보증서 발급시 발급정보 입력, 면제사유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 ‘월별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업체수 및 건수

구분	7월		8월		9월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8	8	11	13	6	7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32	51	34	60	21	4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54	80	53	80	42	59
합계(중복 제외)	82	139	90	153	62	110

사. 기반시설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제출

- ‘건의처 : 본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 ‘건의일자 : ’19. 8. 26

■ 주요 건의사항

- 유지관리대행자의 자구 구체화(종합건설사업자 포함)필요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는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 제10조(유지관리)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건산법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는 단순한 시설물 유지관리 영역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량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
- '19년말 건설업종 개편을 통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용역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 업무영역의 불확실성증대하고 있는 만큼 생산체계개편의 방향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영역을 구체화할 필요



「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

가. 2019-4차 대표회원 조찬강연회 개최

- 일 시 : '19. 10. 2(수) 07:30~
-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6층 메그레즈룸
- 참 석 자 : 회장 및 대표회원, 유관기관장·임원 등 100여명
- 강의주제 : 인공지능, 의사 결정은 데이터로 하라
- 강 연 자 : 이진형 ((주)데이터마케팅코리아 대표)



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건설업계 합동 실무교육

- 최근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를 높이고, 원가계산 실무요령 및 공공공사 분쟁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부정적 발주 사례 방지 도모
 - 일 시 : '19. 10. 17 (목), 13:30~17:5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참 석

- 공무원 : 서울시, SH공사 등 산하 기관 및 구청 공사발주 · 계약담당자 등
- 건설업계 : CEO, 법무팀 및 업무 · 공무 · 외주담당 임직원, 현장소장 등

• 진행순서

내 용	시 간	강 사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13:30~15:00('90)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류동훈 사무관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요령	15:10~16:40('90)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주무관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 -최근 공공공사 계약분쟁 사례 중심	16:50~17:50('60)	법무법인 우송 박 찬 변호사





「건설법령 개정 동향」

가. 조달청 중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19.7.26)

■ 주요 개정내용

-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범위 동일하게 적용
 - (종전) 상위 40%, 하위 20% 제외 → (개정) 상·하위 20% 제외
- 고난도 공사에 단가심사 도입
 - (종전) 일반공사만 단가심사 실시
 - (개정)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단가심사 실시
- 하도급관리계획 감점기준 강화
 - (종전)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60% 미만 → (개정) 64%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9.3.26)사항 반영
- 입찰가격이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동일점수 부여
 - 초과·미만 범위 동일시 (종전) 미만 점수가 높음 → (개정) 동일점수
- 조달청이 산출한 안전관리비 그대로 반영
- 시공계획서 평가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
- 시행일 : '19. 8. 1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시행('19.9.17)

■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완화 (영 제76조제1항)

※'19.9.17 이후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

– 다음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적격 · 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규칙 제 75조의2 신설*)

*내역입찰로서 ①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②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③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영 제76조제2항제2호)

※'19.9.17 이후 요청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부터 적용

– 공정위 및 중기벤처부가 하도급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동 업체가 계약상대자 등이 아닌 경우(입찰자, 전자조달 시스템 견적제출자)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계속공사 수의계약 거부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 삭제 (영 제15조 삭제)

※'19.9.17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쟁입찰 참여가능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 작업상 혼란 우려, 마감공사 등의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경쟁시 참가기준 완화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현행)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개정)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지역제한입찰시 인접 광역시·도까지 제한지역 확대기준 마련 (규칙 제25조제3항)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공사현장이 인접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공사현장 지역의 입찰참여 자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 기 적용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영 제42조제4항제1호)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 (개정) 100억원 이상 공사
-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영 제14조제2항)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현행) 입찰참가자 요구시 교부 → (개정)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사유' 신설 (영 제37조제3항제5호)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체결 기피 우려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자

- 다음 의무사항을 발주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전환(영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300억이상 공사 현장설명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종심제 및 기술형입찰 공사이행보증
 - ※'19.12.18부터 적용
- 수의계약 사유 추가 (영 제26조제1항가목)
 - ※'19.9.17부터 적용
 -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 시설물 개선 등 수의계약 사유 추가
- 청렴계약 포함내용 확대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
 - ※'19.12.18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현행) 금품·향응 → (개정)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19.10.4)

■ 주요 개정내용

-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개선(예정가격 작성요령)
 - 예정가격 산정시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고려하여 자재단가 계상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계상 명시
 - ※협회의견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 지출비용 포함
 -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
 - 호우, 해일, 폭염 등 자연현상
 - 붕괴, 폭발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미세먼지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그 밖의 통제범위 벗어난 사유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연배상금 상한(계약금액 30%) 명시(공사계약일반조건)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타 개정(안) 사항
 -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급지급(선금 대가 지급요령)
 - 주계약자공동도급에도 기술자 보유관련 업종등록기준 미달시 감점(주계약 자공동도급 운영요령)
 - ※ 50억 미만 적격심사 평가와 동일
 - 이의신청 대상금액 확대(30억→10억)
 - 전문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7억→10억) 상향(제한입찰 운영요령)
- 시행일 : '19. 10. 8

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시행('19.8.27)

■ 주요 개정내용

- 국토부장관의 융·복합 건설기술 개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10조의2 신설)
 - 국토부장관의 융·복합 건설기술 개발·보급·활용 촉진 시책 마련 의무화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신기술 지정을 위한 민간 우수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 권고 근거 마련 및 면책조항 도입(제14조 개정)
 - 신기술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음.
 -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 건설기술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전사고·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 제기시 3일 이내 발주청의 현장 점검 의무화(제54조제3항 신설)
 -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현장점검 의무화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동법 시행령 88조)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기타 사항」

■ 제198차 운영위원·대의원 연석회의 및 상건례 개최

- 일 시 : 2019. 7. 25(목), 07:30
- 장 소 : 서울 소재 H호텔
- 참 석 자 : 운영위원·대의원 등 36인
- 회의내용
 - 전차회의록 : 원안통과
 -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4대 대표회원 보궐선출의 건
⇒ 제26대 회장에게 위임
 - 기타사항



「2019년 7·8·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건수)

업체수	발급서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91	644	1,022	481	2,147

●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서	영업기간 확인서	공정관리 조직	10년간 동일 공종 실적	계
132	153	178	16	3	162	644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건)

건설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부정 당	신재 예방	계
112	13	102	98	98	103	9	130	7	135	119	96	1,022

다. 기타서류

(단위:건)

개별	건설공사실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인	회원 확인	계
	자기	총괄표	소계						
379	2	6	387	0	0	0	94	0	352



「건설업체 현황」

●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9.09.30 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651	2,944	1,951	3,438	30	288	10,668	2,944	1,951	4,095	353	1,325
비회원	4,396	174	634	3,453	33	102	4,545	174	634	3,561	43	133
계	13,047	3,118	2,585	6,891	63	390	15,213	3,118	2,585	7,656	396	1,458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9.09.30 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1,331	227	69	978	10	47	1,494	227	69	1,000	63	135
비회원	569	19	14	501	12	23	580	19	14	503	17	27
계	1,900	246	83	1,479	22	70	2,074	246	83	1,503	80	162

●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건축	050909	한신종합건설(주)	심규현	광주	2019-07-17(2019-07-29)
2	건축	140535	(주)준영종합건설	권영근	경기	2019-07-18(2019-07-30)

3	건축	050579	(주)공간건설산업	박정준	경기	2019-07-02(2019-07-30)
4	건축	102547	대승건설산업(주)	전천현	경기	2019-07-12(2019-08-12)
5	건축	180852	대정종합건설(주)	이기인	제주	2019-07-25(2019-08-16)
6	건축	030513	우리인종합건설(주)	이일재	대구	2019-08-19(2019-08-22)
7	건축	060482	청송종합건설(주)	홍종훈	충남	2019-08-05(2019-08-22)
8	건축	105639	(주)프로솔	이미경	경기	2019-08-14(2019-08-28)
9	건축	013180	리드건설(주)	이순재	인천	2019-07-29(2019-08-30)
10	건축	140637	(주)자성건설	윤승모	전북	2019-08-16(2019-09-03)
11	건축	021551	제이든씨앤디(주)	김재현 곽동욱	부산	2019-08-28(2019-09-03)
12	건축	103206	우리마을에이앤씨(주)	하광수	경기	2019-07-11(2019-09-05)
13	건축	130234	코리아종합건설(주)	장국현	충남	2019-08-19(2019-09-10)

● 진출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건축	014457	(주)다현종합건설	김영수	경기	2019-06-18(2019-07-03)
2	건축	014482	(주)기존종합건설	김규철	인천	2019-07-05(2019-07-11)
3	건축	050807	(주)굿모닝종합건설	이주철	경기	2019-07-01(2019-07-11)
4	건축	102877	더케이종합건설(주)	김종륜	경기	2019-07-01(2019-07-11)
5	건축	013968	진흥개발(주)	정성수	경기	2019-06-25(2019-07-19)
6	건축	014484	(주)진솔종합건설	김기섭	경기	2019-07-15(2019-07-23)
7	건축	014494	(주)피케이종합건설	박종길	경기	2019-07-23(2019-07-29)
8	건축	014476	(주)태산종합건설	박덕균 유창선	전북	2019-08-01(2019-08-06)



9	건축	013973	(주)에스엔케이산업개발	김철윤	경기	2019-07-29(2019-08-08)
10	건축	014505	(주)이지종합건설	박성미	경기	2019-07-26(2019-08-12)
11	건축	014511	(주)태영종합건설	방주일	경기	2019-08-07(2019-08-12)
12	건축	021500	다올종합건설(주)	고현오	경기	2019-07-31(2019-08-13)
13	건축	013523	(주)삼오건설	장영복	경기	2019-08-08(2019-08-21)
14	건축	013611	거산종합건설(주)	백영민	경기	2019-08-19(2019-08-29)
15	건축	102756	경일종합건설(주)	최은아	경기	2019-08-27(2019-09-04)
16	조경	010327	(주)송원조경	여판호	경남	2019-09-03(2019-09-06)
17	토건	010216	경보종합건설(주)	김영임	경기	2019-09-03(2019-09-16)
18	건축	014470	제이에스종합건설(주)	이정헌	충북	2019-09-23(2019-09-26)
19	건축	014522	우현건설(주)	손진현	경기	2019-09-23(2019-09-30)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 상담방법 : 우리사회 사전신청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신청서식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scak.or.kr→자료/통계→건설서식→민원서식/기타) 참조

- 문의_ 법률 : 건설정책실 (02-3218-9117, pjingong@cak.or.kr)
회계/세무 : 기획총무실 (02-3218-9112, pje@cak.or.kr)

- 법률 상담 - 변호사

시회고문	박찬(朴燦) 변호사	변철형(邊哲亨)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우송	법무법인 진
위촉기간	'19. 8. 1 ~ '20. 7. 31	'19. 1. 1 ~ '19. 12. 31
비고	전직 부장판사	전직 부장검사
프로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정치학과('79), 법과대학원('82)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2기 수료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서울대 정치학과 법조모임 회장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경영학과('94)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검사(특수3부) -울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특수부) -광주지검 부부장검사(공안부) -광주지검 목표지청 부장검사 -창원지검 특수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 회계/세무 상담 - 회계사/세무사

시회고문	한윤교 회계사	임의준 세무사
소속	반석회계법인 대표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
프로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Univ.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 졸업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Price Waterhouse Co. 와 Deloitte Touche LA 회계법인 근무 -골드만삭스 COO,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장 및 COO, SC 저축은행 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86) -동부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제1특별조사담당관실, 법인세과, 법무1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행정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사무관) -역삼세무서 법인납세과장 -강남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위원"

종합건설업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지자체 신원조회 활용)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전, 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재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지방전입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AK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회원가입 일자
건축	014488	신미종합건설(주)	조영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25, 201호(역촌동,대성빌딩)	2019-07-01
건축	014491	오솔로종합건설(주)	이석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77, 620호(마곡동,보타닉파크타워1차)	2019-07-02
건축	014492	(주)중원건설산업	심성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1가길 1-1, 102호(갈현동)	2019-07-04
건축	014496	디앤에이치건축(주)	정대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나길 2, 101호(우이동)	2019-07-08
건축	014495	우상종합건설(주)	임영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제5층 제55-508호(문정동,송파한화오벨리스크)	2019-07-08
건축	014497	(주)어반씨엔디	양병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8, 3층 336호(성수동1가,홍성빌딩)	2019-07-16
건축	014498	(주)디자인웰	이정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1(성수동2가)	2019-07-16
건축	014499	채원종합건설(주)	황순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84, 215호(신도림동,신도림팰러티움)	2019-07-16
건축	014501	(주)오아시스종합건설	이종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28, 302호(성수동2가,대선빌딩)	2019-07-16
건축	014504	(주)부건	조만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8길 20, 401호(논현동,백향빌딩)	2019-07-23
건축	014503	(주)공간기록	전현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3층(역삼동,인호아이피빌딩)	2019-07-25
건축	014500	한성씨에이치종합건설(주)	최수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186, 비01호(응암동,한성밸라트리)	2019-08-01
건축	014508	성호건설(주)	김성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23, 205호(염창동,성우빌딩)	2019-08-01
건축	014512	(주)미진이엔씨	이화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3길 7-14, 4층 403호(양재동,우영빌딩)	2019-08-01
건축	014510	제이엘건설산업(주)	이치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0, 4층(응우동,한진빌딩)	2019-08-06
건축	014513	(주)로베종합건설	곽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29, 202호(상계동)	2019-08-07
건축	014514	(주)동부플래니처	정강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202호(개포동,대청타워)	2019-08-14
건축	014518	(주)빌드원건설	정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30, 403호(송파동,미석빌딩)	2019-08-14
건축	014520	(주)한림네트웍스	최윤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37(삼전동)	2019-08-14
건축	014521	씨엔지건설(주)	윤윤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16-1, 지층102호(성수동1가)	2019-08-14
건축	014471	(주)이을건축	석현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5길 14, 601호(서교동, 해임하우스)	2019-08-19
건축	014528	건일종합건설(주)	김민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길 22, 1층(중곡동)	2019-09-16
건축	014529	(주)에스티모빅	전종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01(길동)	2019-09-16
건축	014530	경산엔지니어링(주)	박장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14층(서초동,한승아트라)	2019-09-16
건축	014531	(주)미이광디자인	김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제18층 제1801호(가산동,에스케이브이원)	2019-09-16
건축	014533	대상종합건설(주)	김영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0, 102호(역촌동,대상오피스텔)	2019-09-16
건축	014487	에이치씨건설(주)	유재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24, 202호(신정동)	2019-09-23
건축	014493	(주)마신종합건설	안창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문화콘텐츠센터)	2019-09-24
건축	014538	(주)국보종합건설	김창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20, 2층202호(목동)	2019-09-24
건축	014537	풍성종합건설(주)	임명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50(목동)	2019-09-25
건축	014463	(주)신비종합건설	신다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5-4, 3층302호(영등포동6가,오케이빌딩)	2019-09-25
건축	013061	(주)동연건설	김춘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1길 9, 3층(방이동)	2019-09-25
건축	014516	(주)하일종합건설	정태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209호(여의도동)	2019-09-27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CAK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